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8. <u>Cp클래스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p> <p>9.~1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p> <p>9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4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6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</p>

<p>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(생 략)</p> <p>8. <u>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9.~12.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~⑤(생 략)</p>	<p>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9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4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6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생 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 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 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 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7.(생 략)</p> <p>8. <u>Cp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~라.(생 략)</p> <p>9.~12.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 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 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 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~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9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2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 <p><u>14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6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</u>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0.17</u>  <u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 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8</u> 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 <p><u>0.17</u>  <u>16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 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u> 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A클래스·C1클래스·C2클래스·C3클래스·C4클래스·C5클래스·Ce클래스·W클래스·I클래스·S클래스 ·CG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<u>Cp클래스 수익증권</u>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</u>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A클래스·C1클래스·C2클래스·C3클래스·C4클래스·C5클래스·Ce클래스·W클래스·I클래스·S클래스·CG클래스·<u>Cp클래스·Cp-E클래스·S-P클래스·Cp2-F클래스</u> 수익증권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
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</p>	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</p>

<p>증권저축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증권저축약관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